

#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8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박기재, 권수정, 김경영,  
김경우, 김소영, 김제리,  
김호진, 김화숙, 문병훈,  
오한아, 이영실, 조상호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,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음.
- 이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##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) 시장은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2021100800000016
------	------------------

## 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10.08	
회신일 : 직접입력	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

○ 실종아동의 날 행사비용 ≙ 50,000천원

= 10,000천원 × 5년

※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입양의 날 행사비 10,000천원

○ 실종아동 발생예방 교육비용 ≙ 150,000천원

= 30,000천원 × 5년

※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비 30,000천원

○ 실종아동 발생예방 홍보비용 ≙ 91,000천원

= 18,200천원 × 5년

※ 2021년 시민건강국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15,000천원

※ 2021년 주택정책실 층간소음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비 21,400천원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주무관 이해린

☎ 02-2180-7955

e-mail : lovelyynn91@seoul.go.kr